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필수서류	신분증사본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 이후 발급여권제외) 등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	본인	아파트 계약용(본인발급),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가능
	인감도장	본인	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(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)
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관계, 발생일, 변동사유 등 "모든정보표시"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유, 세대주 및 관계 등 "모든정보표시"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"상세"발급
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"상세"발급
	출입국사실증명	본인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거주사실 확인,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)
	배점기준표	-	[양식] 접수장소 비치
추가서류 (해당자에 한함)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관계, 발생일, 변동사유 등 "모든정보표시"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입증받기 위한 경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세대 구성에 포함하는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"상세"발급)
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	직계비속	만18세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"상세" 발급)
	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"상세"발급)
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만 인정,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)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-	[양식] 접수장소 비치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복무확인서	본인	10년이상 /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
위임시 추가서류 (본인 외 모두해당)	위임장	-	[양식] 접수장소 비치 (당첨자의 인감도장을 날인)
	인감증명서	본인 (당첨자)	용도: 아파트 계약 위임용(본인발급에 한함, 대리발급분 불가)
	신분증	대리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대리인 본인 확인용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
부적격 의심자 추가서류	부적격소명서류	-	부적격 사유에 따라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

※ 본 안내문에 반영된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,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023.08.17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

※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,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※ 상기 서류는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,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함. 또한 주민등록표등(초)본에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,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함

